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-23호

우편환법 제9조(요금)관련 우편환 요금(제2021-30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28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환 요금

국 내 환					
통 상 환		온 라 인 환		경조금배달서비스	
송 금 액	요금	송 금 액	요금	송 금 액	요금
3만원 이하	**500**원				
5만원 이하	**1,000**원				
10만원 이하	**1,500**원	10만원 이하	**2,500**원	10만원 이하	**3,000**원
100만원 이하	**2,500**원	100만원 이하	**3,500**원	100만원 이하	**4,000**원
100만원 초과	**3,500**원	100만원 초과	**4,500**원	100만원 초과	**5,000**원

특 수 취 급			
구 분	수 수 료	구 분	수 수 료
○온라인환 현금 배달료 (경조금배달서비스 포함)	**2,000**원 + 현금배달봉투대금	○지급사실조사료	**1,420**원
		○지급정지료	**500**원
○경조금배달서비스 - 송금인 연기료	**80**원	○지급필통지료 - 송금청구시	**500**원
○증서송달료 - 보통등기우편	**2,830**원	- 송금청구후	**1,000**원
- 익일특급	**3,830**원	○기재사항정정청구료	**500**원

※ 국제환: 2021. 6. 7.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 기한)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